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 윙고빙고 적금 』 특약 (구 외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구행명 삭제, 기본적용약관 변경, 적립방법 표현명확화, 우대금리 제공조건 변경, 분할해지방식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~
<p><b>제1조 약관의 적용</b></p> <p><u>윙고빙고 적금(구 외환은행)</u> 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한다.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<u>‘예금거래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’ 및 ‘적립식예금약관(구 외환은행)’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<b>제2조 가입대상</b></p> <p>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에 만18세이상 만30세 이하인 <u>실명의 개인이며</u>,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</p> <p>제3조 (생략)</p> <p><b>제4조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적금은 매월 일백만원 한도내에서 계약기간 동안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. <u>다만, 계약기간 3/4경과 후에는 이전 납입한 적금잔액의 1/2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제5조 ~ 제6조 (생략)</p> <p><b>제7조 우대금리</b></p> <p>① 만기해지시점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</p>	<p><b>제1조 적용범위</b></p> <p><u>윙고빙고 적금</u> 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한다.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<u>‘예금거래기본약관’ 및 ‘적립식예금약관’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<b>제2조 가입대상</b></p> <p>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에 만18세이상 만30세 이하인 <u>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</u>,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</p> <p>제3조 (좌동)</p> <p><b>제4조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</b></p> <p>① (좌동)</p> <p>② 이 적금은 매월 일백만원 한도내에서 계약기간 동안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. <u>다만, 계약기간 3/4경과후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경과 전 납입한 적금잔액의 1/2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제5조 ~ 제6조 (좌동)</p> <p><b>제7조 우대금리</b></p> <p>① 만기해지시점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0.3%의 우대금리를 제5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p> <p>구행명 삭제, 기본적용약관 변경</p> <p>가입대상 확대</p> <p>3/4계약기간 경과후 적립가능한도 표현 명확화</p>

<p>경우 연0.3%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</p>	<p>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우대항목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거래우대</td> <td>본인명의 <u>윙고통장과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보유시 연 0.1%</u></td> </tr> <tr> <td>목표달성우대</td> <td>생략</td> </tr> <tr> <td>취업성공우대</td> <td>생략</td> </tr> <tr> <td>신입사원 우대</td> <td>생략</td> </tr> <tr> <td>친구추천 우대</td> <td>생략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우대항목	내용	거래우대	본인명의 <u>윙고통장과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보유시 연 0.1%</u>	목표달성우대	생략	취업성공우대	생략	신입사원 우대	생략	친구추천 우대	생략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우대항목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거래우대</td> <td><u>본인명의 윙고통장 보유시 .1%</u></td> </tr> <tr> <td>목표달성우대</td> <td>좌동</td> </tr> <tr> <td>취업성공우대</td> <td>좌동</td> </tr> <tr> <td>신입사원 우대</td> <td>좌동</td> </tr> <tr> <td>친구추천 우대</td> <td>좌동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우대항목	내용	거래우대	<u>본인명의 윙고통장 보유시 .1%</u>	목표달성우대	좌동	취업성공우대	좌동	신입사원 우대	좌동	친구추천 우대	좌동	<p>카드보유조건 삭제</p>
우대항목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
거래우대	본인명의 <u>윙고통장과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보유시 연 0.1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
목표달성우대	생략																									
취업성공우대	생략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입사원 우대	생략																									
친구추천 우대	생략																									
우대항목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
거래우대	<u>본인명의 윙고통장 보유시 .1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
목표달성우대	좌동																									
취업성공우대	좌동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입사원 우대	좌동																									
친구추천 우대	좌동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(※)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창구, 인터넷, 지로대량이체,결제원 CMS대량이체, 타행환, 전자금융공동망 등을 통한 입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금내역(코드)가 급여(연금)성 자금인 경우</li> <li>- 거래내역이 급여, 상여금, 상여, 월급, 봉급, Salary, Bonus, Pay, Payroll, 연금인 경우</li> <li>- 상기 거래내역 + 기업체명 또는 기업체명 + 상기 거래내역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다만 영업점 창구입금시 거래내역 직접 투입분은 제외됨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● 급여이체 지정일에 입금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객이 지정하는 급여일 전후 2영업일에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8조 (생략)</p>	<p><b>(※)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고, 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로 입금시 (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 )</li> <li>- 급여일 ± 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</li> </ul> </li> </ul> <p>② ~ ③ (좌동)</p> <p>제8조 (좌동)</p>	<p>급여인정기준 변경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9조 분할해지</b></p> <p>① 이 적금은 계약기간중 만기해지분을 포함하여 3회이내에서 <u>선입선출방식에 따라</u>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0조 (생략)</p>	<p><b>제9조 분할해지</b></p> <p>① 이 적금은 계약기간중 만기해지분을 포함하여 3회이내에서 <u>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</u> 해지가 가능하며,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</p> <p>② (좌동)</p> <p>제10조 (좌동)</p>	<p>분할해지 계산방식 변경</p>																								

## 윙고빙고 적금 특약

### 제1조 적용범위

윙고빙고 적금 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한다.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‘예금거래기본약관’ 및 ‘적립식예금약관’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가입대상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에 만 18세 이상 만30세 이하인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,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### 제3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

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이며, 계약기간은 1년제 또는 2년제로 합니다.

### 제4조 가입금액 및 납입방법

- ① 이 적금의 가입 및 납입금액은 일만원이상 일백만원이내로 원단위로 합니다.
- ② 이 적금은 매월 일백만원 한도내에서 계약기간 동안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계약기간 3/4 경과후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경과전 납입한 적립잔액의 1/2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.

### 제5조 기본금리

이 적금의 금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.

### 제6조 이자의 지급

- ① 이 적금의 이자는 납입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5조에서 정한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②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납입금마다 입금일부터 최종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후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 제7조 우대금리

- ① 만기해지시점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연0.3%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
우대 항목	내 용
거래 우대	본인명의 원고통장을 보유시 연0.1%
목표달성 우대	적금가입시 정한 적립목표액 달성시 연0.1% (최소 120만원이상 목표액 설정)
취업성공 우대	적금 가입후 적금 계약기간내 취업에 성공시 연0.1%
신입사원 우대	적금 만기월 전월말까지 급여이체실적 <sup>(주)</sup> 보유시 연0.2%
친구추천 우대	적금 만기월 전월말까지 본인 추천번호로 친구 등 지인이 원고 빙고 적금을 가입시 추천고객과 가입고객에게 각각 연 0.1% (친구추천 우대항목은 최대 2인, 연0.2%까지 가능)

(주)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

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고, 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

-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로 입금시

(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 )

- 급여일 ± 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 (급여일 사전등록)

② 취업관련 우대항목 증빙서류는 합격통지서,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 증빙서류를 의미합니다.

③ 제1항의 우대금리는 만기에 해지할 경우에만 적용하며 중도해지 및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## 제8조 빙고금리

제7조의 우대 최대금리(연0.3%)를 모두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빙고금리 연0.1%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
#### 제9조 분할해지

① 이 적금은 계약기간중 만기해지분을 포함하여 3회이내에서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.

② 질권설정된 계좌, 지급정지된 계좌, 만기일이 경과된 계좌, 기타 사고신고 등이 된 계좌는 분할해지할 수 없습니다.

#### 제10조 특별중도해지

① 이 적금 가입 6개월이상 경과후 예금주 본인의 등록금 납입, 해외유학, 창업의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.

② 특별중도해지시에는 가입당시의 기본금리를 적용하며, 우대금리 또는 빙고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
③ 특별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는 등록금 고지서, 해외학교 입학허가서, 사업자등록증 등을 의미합니다.

부칙 (제정)

이 부칙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(1)

이 특약은 2015년 8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부칙(2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